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310

제출일자 : 2016. 10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폐지이유

가. 본 조례는 농업인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9. 10. 9. 제정(조례 제1683호)·시행하여 왔으나,

나. 「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5조제1호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되어있으므로

다.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달성군농업인조직육성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달성군농업인조직육성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

-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조직육성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5조제1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성별/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2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6. 8. 25. ~ 9. 13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제1호

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4.>

[전문개정 2011.5.30.]